

일반 논문

북한 장애인의 삶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과 차별

송현진 (이화여대)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의 삶과 그 속에서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현황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질병 후유증이나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5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북한에서 장애인은 교육과 조직생활, 생계유지와 회복치료, 결혼과 이동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며, 장애인들은 언어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 북한 당국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셋째, 그 과정에서 북한 장애인들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으며 장애 유형별, 집단별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장애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장애인의 삶을 밝히려 시도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주제어: 북한, 장애인, 사회적 인식, 차별, 장애자보호법

I. 서론

현재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장애인 복지에 대해 최초로 규정한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주로 ‘불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법 제정 후에는 ‘장애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보호법」 제2조에서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장애자의 정의와 국가 책임 및 차별금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¹⁾ 2013년 7월 3일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서명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11월 「장애인보호법」을 수정, 보충하여 법제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런 북한 당국의 노력은 북한 장애인의 삶의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적 조치의 변화에 발맞추어 북한 사회에 실제하는 장애인의 삶,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처우에 대한 실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5조에 장애인에 대한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98년 장애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41%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²⁾ 2003년 「장애인보호법」 제정 후 2011년에 2차 조사를 했고, 장애인 인구는 5.8%로 집계되었다. 2013년 7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3447호 2013년 1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2013).

2) 오경섭 · 홍석훈 · 홍제환 · 정은미 · 이지순,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379쪽.

3일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자보호법」을 수정한 후 2014년에 3차 실태조사를 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 의해 이루어졌고, 인구의 6.2%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북한이 제출한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5%이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 약 2천 573만 명 중 141만 5천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⁴⁾ 이런 북한의 장애인 현황은 남한의 장애인 인구가 267만 명으로 장애출현율이 5.39%인 점에서 남과 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⁵⁾

지금까지 북한 장애인 관련 연구로는 북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⁶⁾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

3) 위의 글, 380쪽.

4)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 비율이 5.9%로 남성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장애인 비율이 16.9%로 가장 높고 17세~59세 장애인 비율은 4.8%, 7~16세는 1.0%, 5~6세는 1.5%, 0~4세 비율은 0.3%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2.5%로 가장 높으며,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로 나타났다. 북한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고등중학교 졸업 비율이 64.3%로 가장 많으며, 대학교 14%, 전문대학 8.2%, 인민학교 5.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전체 장애인 중 58.4%가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47.4%, 공무원 25.3%, 농민 27.3%로 나타났다. 위의 글, 381쪽.

5)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남한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명으로 장애출현율은 5.39%이다. 여성장애인은 42.8%로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에 비해 많았으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3.3%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이며, 다음은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출현율을 나타냈다. 남한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대학 이상 15.1%, 무학 10.4%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의 전체 장애인 중 36.7%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체 51.6%, 자영업 30.2%로 나타났다. 김성희 외 공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19-330쪽.

6)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2013); 이규창, 「북한 장애인

을 다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⁷⁾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⁸⁾ 북한의 아동기 발달장애 진단 및 지원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연구,⁹⁾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¹⁰⁾ 이 선행연구들은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정보 수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법률이나 정책, 교육의 체계 등에 대해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로 북한 정부에서 발행한 문헌에 근거한 분석 또는 비교로 북한의 장애인 제도와 정책을 주로 밝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밝힌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와¹¹⁾ 북한 장애인의 체육참여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¹²⁾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자료를 통해 북한 장애인의

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인권과 정의』 통권 465호 (2017); 정유석·이철수,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 (2016); 정지웅,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역압」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3권 3호 (2016); 송인호, 「북한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1호 (2019); 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동북아연구』 제34권 1호 (2019); 이철수·김효주,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협약원칙의 쟁점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1호 (2019).

7)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4호 (2006); 정지웅·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통권 34권 (2016).

8) 정지웅,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3호 (2020).

9) 이미션·이경숙, 「북한 아동기 발달장애 진단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통권 52호 (2021).

10) 안상권·홍정숙,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3호 (2016).

11) 김석향,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일상생활 및 체육참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했다는 점에서 북한 장애인의 생활 및 실태 연구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밝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중도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장애인의 장애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¹³⁾ 이런 선행연구들에서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한 법, 정책, 교육, 일상생활 등을 다루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 장애인의 차별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의 삶,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현상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장애인 권리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 장애인이 삶에서 경험한 다양한 차별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밝히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장애인의 삶에서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 경험한 장애인의 삶을 탐색한다. 둘째, 북한 출신 장애인들이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북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본다. 셋째,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마주한 다양한 차별 현황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과거 북한에서 장애인의 삶을 살다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5명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장애인의 삶과 차별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접촉

12) 조가람·이용호, 「북한의 장애인체육 현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1호 (2018).

13) 윤세라·허준기,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정체성 연구: 중도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2018년 11월 (2018).

이 가능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참여자로 한 연구는 실제적인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북한의 장애인 제도는 초기에는 영예군인 등 국가에 공헌한 장애인에 집중되었다가 점차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어왔다. 먼저 장애인에 관한 법령으로는 1951년 ‘조국해방전쟁에서 불구자로 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 설치에 관하여’와 1953년 ‘제대군인 및 영예전상자들의 직업 알선과 취학 조건을 보장할 데 관하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으로 1953년 5월 ‘내각 지시 24호’를 통해 장애인들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은 양생원에 수용하여 재활훈련을 시켰다. 1951년 영예군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교정기구공장을 설립하고, 1959년 농아학교 8곳과 맹아학교 3곳을 설립했다. 이처럼 북한의 장애인 제도는 영예군인을 위한 대책으로 시작했으며, 정권 초기 장애인 정책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에 관심이 컸다. 이후 약 40여 년 동안 북한의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 및 정책은 발전이 지체되어왔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식량난을 맞아 북한은 1995년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며 비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에 나섰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사회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해왔다. 이에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적고 선전효과가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외적으로 인권 존중에 나서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¹⁴⁾ 북한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

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외에도 2007년 「년로자보호법」, 2008년 「사회보험법」,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각각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를 완비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장애인·노인·아동·여성 관련 법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미사일 및 핵실험 감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경제난을 돌파하려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내부적으로는 2013년 「장애자보호법」을 수정하고, 외부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인 정책의 변화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13년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와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고, 국제사회의 장애인단체와 협력을 체결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장애인 지원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가 나가면 국제사회의 장애인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이 북한에 정식으로 발효되고, 북한은 201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신장, 복지에 대한 북한의 협약 이행 여부를 자체 평가한 공식보고서다. 이제 북한은 국제협약으로부터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지 않

14)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5쪽.

을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유엔 가입 정회원국 193개국 중 177개국이 가입한 협약임에 따라 북한은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최대한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¹⁵⁾ 이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적 수준을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가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속력과 함께 북한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한 반발과 함께 장애인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은 2003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며 법·제도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은 북한이 최초로 독립적, 직접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에 관해 규정한 유일한 법률이다. 이후 북한은 2013년 7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반영하여 11월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장애자보호법」은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장애자 개념, 장애 종류, 실태조사, 인민들의 장애자에 대한 인식개선 조치, 영예군인과 사회주의 건설에 공로를 세운 장애자 우대,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조 강화),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3장 장애자의 교육(학력 전 장애자의 보육교양, 학력장애자의 취학보장, 장애자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 특수학교의 조직 운영 등),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장애자의 체육활동 조직, 문화 정서활동조직 등), 제5장 장애자의 노동(지역별 장애자 전문기업소, 장애자 배치, 장애자의 노동보호조건 보장, 노동나이, 노동시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에 대한 보조금 지불, 양생원·양로원 생활보장 등),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

15) 이철수·김효주,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협약원칙의 쟁점을 중심으로」, 106-109쪽.

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018년 이후 장애인 관련 기사를 내보내며,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과시하고 있다. “장애자들을 차별없이 친절하게 적극 도와주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장애자보호정책의 중요한 요구”라며,¹⁶⁾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풍을 만들어가자며 다양한 미풍을 소개하고 있다. 2003년 제정된 「장애자보호법」의 우월성과 함께 장애인어린이를 위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기능공학교, 과학기술전당의 장애자열람실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¹⁷⁾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 및 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선장애자체육협회와 조선장애자예술협회 등을 설립했음을 알리고 있다.¹⁸⁾ 또 평안북도에 양생원을 새로 건설했으며,¹⁹⁾ 국제장애자의 날을 기념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²⁰⁾ 평안북도에 있는 40여 개의 경노동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신발·옷·안경 수리 등 6시간 치료노동과 영양급식, 보약치료를 받는 등 ‘사회보장초대소’를 통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²¹⁾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과 정책적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변화 움직임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물론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장애인 법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북한 장애인의 현실을 조명해 북한 당국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16) 『로동신문』 2018년 7월 29일.

17) 『로동신문』 2018년 12월 3일.

18) 『로동신문』 2021년 8월 12일.

19)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20) 『로동신문』 2019년 12월 4일.

21) 『로동신문』 2021년 12월 2일.

Ⅲ. 연구 방법

1. 심층 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통한 질적연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 내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차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면담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자를 연구하는 데 좋은 방법론은 알려져 있다. 소수자란 한 사회 내에서 해당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 장애, 인종 등과 같은 요인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²²⁾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열악한 소수집단으로 자리하며,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 내 장애인의 삶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장애인을 참여관찰하거나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북한 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북한 장애인의 삶과 차별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 출신으로 장애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로 북한 사회

22) 김석향·김미주,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32권 2호 (2020), 4쪽.

에서 장애인의 삶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를 위해 장애를 갖게 된 시점, 성별, 학업, 사회활동 경험, 연령대, 장애 정도 등 다양한 맥락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북한 장애인 제도와 현실 사이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2003년 「장애인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을 떠난 사람들로 모집하였다. 모집은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는 A 탈북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신체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를 지닌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는 북한 장애인 중 정신·발달 장애인보다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고, 북한이탈주민 중 신체장애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탈북년도	장애 유형 및 장애 시점	결혼여부	학력	직장	지역
A	50	여	2018	1970년 출생 9개월경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 마비	기혼	중졸	무직	양강도
B	73	남	2009	1976년 폭행으로 한쪽 시력 상실	기혼	고졸	장사	함경북도
C	40	남	2006	1996년 기차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 절단	미혼	초졸	무직	함경북도
D	53	여	2015	1984년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쪽 팔 절단	기혼	고졸	장사	함경북도
E	32	여	2013	2000년 심장심근염 후유증으로 심장병 신체장애	기혼	중졸	장사	함경북도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북한 장애인의 삶과 차별 현황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 장애인의 삶 전반에 대한 반구조화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 일정을 협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2019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을 보면,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으로서 삶의 경험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장애 경험의 상세한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하면서, 연구참여자가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성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사회적 인식과 다양한 차별 경험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1회당 면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면담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 노트에 메모하며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연구자는 탈북민단체 경험, 북한이탈주민 면담 경험에 기초하여, 참여자에 공감하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대화 및 비언어적 대화,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해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면담 직후 바로 전사하였다. 1차 면담 내용을 전사하면서 면담 과정에서 지나쳤거나 알아채지 못한 질문이 발견되면 2차 면담 질문에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전체 전사본 분석과정에서 발견되는 추가 질문은 이메일, 전화를 이용해 추가 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녹취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고 주제화 작업을 하고, 사례를 재구

성,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사적인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신변 보호를 위한 연구 윤리와 직결된다.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기술되는 연구결과의 내용들은 연구참여자와 교차점검(cross-check)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동의를 거친 부분에 한하여 반영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이들의 장애 경험을 분석, 해석하는 글쓰기를 수행했다. 무엇보다 연구 분석 및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 장애인 출신으로 질적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동료연구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 검증의 과정을 진행했다.

IV. 연구 결과

1. 북한 장애인의 삶

1) 장애인의 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장애자보호법」도 제3장에서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 내에는 삼봉, 함흥, 원산, 시중, 운진, 성천, 봉산, 봉천 농아학교와 함흥, 봉선 대동 맹아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³⁾ 연구참여자에게 의하면 북한에서 장애인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선천적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런 의식 자체가 북한 사회에 존재하지 않

²³⁾ 도경옥·김수암·이규창·한동호·홍민·임예준,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386쪽.

는다고 하였다. 국가에서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과정에서도 편견에 따른 놀림이나 모욕을 수시로 경험해야 했다.

우리 오빠도 다리가 불구였는데 나가면 아이들이 놀렸어요. 야 병신아, 그러면 나도 학교 다닐 때 내가 씹하면 나보고 병신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참여자 D)

국가의 장애인 복지혜택이 보편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북한에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은 오로지 부모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 자녀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는 부모가 자녀를 꾸준히 데리고 다닐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장애인을 둔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국가나 학교가 그것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것이 북한 현실이다.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교사를 운 좋게 만나거나,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만난 경우에 의무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한 불구 애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아이들이 놀릴까 봐 부모들 자체가 학교에 안 보내죠. 근데 다리나 약간 절구 이런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중략) 교육을 받게 하려면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불구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 같은 건 있어도 없어도 된다고 할 정도인데(중략) 저는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서 아 어머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담임선생님이 저를 업고 다니며 해서 발은 떼었지만, 그 후로는 우리 부모가 업고 다녔죠. (참여자 A)

북한에서 지체장애들은 학교 안 가는 걸로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 안 다녀도 통제 안 해요. (참여자 B)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가 몸이 아프고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도와주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학부형 책임자를 해서 학교에서 제기되는 것은 빠짐없이 해주고 학생이 아파서 며칠 못 나오면 다른 학생들이 가서 데려오게 했는데(중략) 그건 엄마가 학교에 열성을 많이 냈고 학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고 해서 가능했어요. (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정책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 특히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중등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이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에 있어 교사가 그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구술했다.

저희 학급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부터 선생님들 배워주는 게 차별 놓는 거예요. 저는 안 배워주는 거예요. 배워주면서 모르는 게 있음 손 드시오. 내가 손 드는데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부터는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근데 너는 대학을 못 간다. 왜 못가냐 하니까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간부양성기지다. 대학을 나오게 되면 간부를 해야 되겠는데 불구가 어떻게 대중 앞에 나서냐. 간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고 해요. (참여자 B)

2003년 제정된 북한 「장애자보호법」 제19조는 “장애유형에 따라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 농아인,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²⁴⁾라고 명시하여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형태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⁵⁾ 연구참여자 A

²⁴⁾ 장애자보호법 (2003).

는 맹인학교, 농아학교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구성되어 교육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장애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이 되면 학교에 못 가요. 북한에 맹인학교 농아학교는 있는데 그 학교는 12살이 지나야만 간다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지체장애인들을 배워주는 학교는 없거든요. 결국 일반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국가에서 혜택이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운명에 맞아서 저는 저를 맡은 선생님이 좋은 분이어서 저를 업고 다니며 배워주셨어요. 근데 다른 불구들은 그런 분을 못 만났으면, 그건 배워주라는 응당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반 누구누구는 환자, 불구라고 하면 학교에서 찾지 않거든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학교 간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참여자 A)

2) 장애인의 생계유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근로 및 고용’에 대해, 북한 「장애자보호법」 제5장 역시 장애자의 노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국가보고서에서도 장애인 중 직업을 가진 비율이 58.4%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 장애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웃에게 먹을 것을 청하거나 시장에서 흘러진 물건을 주워오거나, 식량이나 석탄 등을 도둑질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경증장애인인 경우 그들을 위한 생계공간이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장사를 하는 것으로

25) 안상권·홍정숙,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3호 (2016), 253쪽.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침체와 배급제 쇠퇴 이후 일반인도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계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은 그저 죽은 목숨이나 같죠. 찾는 사람도 오라는 사람도 가라는 사람도 없고. (참여자 D)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쳐야 했고, 차라리 죽던가 살아야겠다(중략) 이렇게 평생 가족이 벌어주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석탄을 팔고 꽃제비 왕초도 하고, 그 정치범 관리소에서 나오는 식량도 훔쳐서 먹고 그러다 장사도 좀 하고 (참여자 C)

저는 집에서 제 손으로 벌어먹었어요. 재봉질도 하고 시집오기 전엔 재봉질해서 옷도 만들고, 시집와서는 재봉이 힘들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물건 날라다 주면 제가 앉아서 장사했죠. (참여자 A)

장마당에 나가서 뭐 장사했죠. 자전거 부속, 번호판 이런 거 얻어서 그런 거나 팔고 그랬죠. 사회보장자고 노동자고 뭐 배급도 안주지 돈도 안주지. (참여자 B)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장애인이 된 연구참여자 D는 장애 후에 다니던 공장에서 경비실에 앉아서 접수 보는 단순 업무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간부가 새로 교체될 때마다 직장을 그만둘 것을 종용받아 노동권에 침해 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경비실 접수에 앉아 있고 그저 단순한 일 했던 말이에요. 간부들이 많이 그 사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 온 간부 중에서 다 좋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면 말하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나보고 일 그만뒀으면 하기도 하고, 나를 내보내려고 한 적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서하고 씬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는가 하니, 시집갔는데 쉬어야지 해요. 쉬고 말고

하는 건 내 입장이지 비서동지 입장인가 내가 쉬고프면 쉬는 거지 왜 나를 강짜로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가, 이러면서 내가 다투고 군당에다 제기 했됐단 말이에요. (참여자 D)

중증장애인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연구참여자 C는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국가적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족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탄광에서 식량을 준다 해도 탄광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줄을 서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안 좋아할 때도 있고, 직접적인 물품을 거기까지만 주고 간접적인 편의시설은 안준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나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품을 생산했을 때에는 가끔 아버지 밑에 부양으로 뺏기 때문에 가끔 얻어먹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닌 경우에는 뭐랄까(중략)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여자 C)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사람 가고 군대 직장 갈 사람 가고 그랬는데 저는 다리가 불구니까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회보장 진단받아서 집에서 놀았죠. (참여자 A)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노동을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은 공장이나 기업소, 협동농장의 노동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소외와 차별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조직생활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이다. 그런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 당원이 되는 것은 신분적 특혜를 입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서 간부가 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이 노동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입당하기 어렵다거나 안된다는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일반 장애인은 입당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입당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영예군인만이 입당 조건을 갖춘 대상자이며, 장애인 중 입당은 영예군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건 못 들어봤는데 불구자들이 대개 입당할 조건이 되지 않죠. 영예군인들이나 입당하면 모를까, 그게 뭐 불구자들이 입당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북한에서 노동당의 당원이 되지 못했다. 시각장애인 B는 유일하게 입당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당이 좌절당했다고 했다. 초급당 비서로부터 당원 책을 받아 입당을 준비했지만 일을 시키기 위한 구실이였다. 물론 그가 입당하지 못한 이유는 시각장애인인면서 출신성분도 나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입당이 안된다는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내는 간부로부터 차별적 언사를 들었다고 한다.

초급당 비서가 책이랑 주더라고요. 당원 책. 그런 거 하면 나 후보라도 들 줄 알았어요. 일을 시키자고 그랬더라고요. (중략) 북한에서의 당원은 장애와 관계없죠. 토대를 보니까요. 하지만 처에게는 네 남편이 ‘병신짝’ 같은 게 당에 들어와봤자 뭐하냐. 직장마다 비서가 그랬지요. 네 남편이 병신인데 입당이 돼서 뭘 하느냐.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참여자 B)

집단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노동당원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연령과 직업 여부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북

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조선소년단, 청년동맹 등 근로단체에 입단할 때 장애인을 멀리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인민반 활동에서 인민반장은 자신의 반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고 하거나 차라리 장애 신고를 해서 조직 생활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인민반, 근로단체별로 부과된 과제에 장애인의 몫도 포함되어있어 과제 수행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당조직에서는 불구자들을 멀리하는 것은 없는데, 남한에서처럼 아끼고 배 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중략) 인민반장이 장애 있는 걸 말하면서 자기네 인원만큼 과제 주는데 차라리 동사무소 가서 애길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네 반에서 이사 가라고 했어요. (참여자 E)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조직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무르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민반 생활에서 노동능력 상실자로 인정받았음 에도, 사회동원을 나가지 못하니까 대신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이중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은 조직생 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 진단을 받는 그 자체가 북한은 조직이 세지 않습니까. 소년단 사로청 직맹 등, 나란 사람이 일해야 하는데 일 못 한다는 증명이나 같지, 그 러니까 어느 조직에도 안 가담하고 이때까지 살다가 왔어요. 전 조직생활도 안 했어요. (참여자 A)

인민반 생활할 때, 북한은 모든 일을 인민반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장 애인이면 국가적으로 이 사람은 노동능력 상실자라고 찍어줬는데도 인민반 생활에서는 나 대신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인민반 동원 나갔다면 저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 집이 사는 게 괜찮

다고 안 나가는 대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여자 D)

시각장애인 B는 생산현장이나 직업동맹 등의 조직생활을 할 때 간부들에게 비장애인들보다 일을 잘하지 못해서 멸시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집단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낙오자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먹고 살기 위해 조직이 준 과제를 하지 못하고 염소 키우기, 장사 등을 했을 때도 집단주의에 벗어난 개인주의자로 비판받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과제 분량이 똑같다 이거지. 그럼 딴 사람들은 재깍하는데 난 못하면 구사리 주지.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는다 뭐 어찌고 하면서. 그런 걸 다 참아야지. 아무래도 사회동원에 못 참가하고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대개 공동적으로 조직적으로 일할 때 못 따라간다고 천대받지. 과업 주잖아요. 똑같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씩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내라 하면 장애인 사회보장자라고 조금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애 (중략) 대신 내가 염소를 길러야 먹고 살잖아요. 염소 기르는 걸 욕을 하죠. 개인 이기주의자라고. 내가 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식구는 많지, 그걸 가지고 시비 많지, 일 안 하고 저런 거 한다고. (참여자 B)

공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한쪽 팔이 절단된 연구참여자 D는 장애를 입은 후에도 의수를 끼고 살면서 자신이 속한 여성동맹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가능했지만, 더 높은 상급 단위에서 활동할 때는 장애인이라 활동에서 배제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여맹에서 공연을 준비할 때 공연을 지휘하는 역할도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팔이 이러니까 좀 주저했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몇천 명 되는 곳에서 나를 내세웠단 말예요. 그런 단체 위원장도 하고 내가 많이 했단 말예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깨고 살았기 때

문에 팔이 없다고 주저하거나 이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구에 올라가서 할 때는 너는 좀 빠지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기분이 나빴죠. 그런 데서 차별이 되잖아요. 내가 나서면 좀 우리 구의 얼굴이 손상된다는 의미로 큰 무대에서는 볼구 아닌 여자가 지도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그만뒀지요. (참여자 D)

4) 장애인의 회복치료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북한 당국의 장애인 지원제도는 북한 주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지원정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북한 당국의 장애인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장애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어린이와 군인도 먹고살기 힘든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다고 했다.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불구자인 자들은 그런 건 국가적으로 아무 법이 없어요. (참여자 D)

장애인들 생각 못 해줘요. 북한에선 장애인들까지. 유치원 애들, 군대가 영양실조 걸리는데 장애인들은 상상도 못 하지. 시간제만 줘도 고맙지. 일 안 시키는 것만 해도 대단히 고맙지. (참여자 B)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기억하는 장애인 회복치료를 위한 제도로는 의족·의수를 포함한 장애인 보장기구 정책이었다. 북한에서 장애인보장기구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1951년에 만들어진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이다. 북한 장애인들은 대체로 이 시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절단 장애인들에게 그 병원에서 그걸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다, 알고는 있었죠. (참여자 D)

하지만 이런 지원도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으로 많은 주민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 이전이나 가능했다고 한다. 1990년대 이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1990년대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기구 정책도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국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혜택이 있다고 했다.

국가 일 하다가 다친 사람은 의족을 함흥에 있는 데서 무료로 해줬단 말예요. 함흥 교정기구 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일체 어쨌든지 기차비부터 있는 거 몽땅 무상으로 해줬어요. 1년 동안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음에 의수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해줬어요. 고난의 행군 다음에는 운영 못 한다고 해요. (참여자 D)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 보조기구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고 한 면담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명은 함흥에 그런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교정기구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6개월 이상 기다리는 동안 집을 구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한다. 그것도 뇌물을 주어야 그나마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 의족을 해보지 못했으며, 가족이 만들어준 나무 목발에 의지해서 생활했다고 하였다.

의족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

통 기다리는 것도 6개월 정도, 그동안 살 수 있는 돈과 방을 잡아 빌리고, 월세를 주고, 이런 거를 다 하는 게 어렵다 싶었죠. 그래서 마음을 다 접었죠. (중략) 처음엔 풍풍 뛰면서 다녔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발을 만들었는데 목발은 짚을 수가 없는 게 한쪽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쪽은 겨드랑이에 끼고, 한쪽은 짚고 다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목발을 끈으로 팔에 고정시키고, 한쪽은 짚고 잡아서 고정하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목발은 아버지 공장에 토목하는 분이 여러 개를 만들어줬어요. (참여자 C)

최근에도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 목발 같은 보장기구를 만들어주는 제도나 실행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UN에서 장애인을 위해 지원되는 알루미늄 목발이 있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영예군인에게 주어졌으며 일반 장애인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도 들어오면서 UN기구라는 게 나오면서 목발이 UN기구에서 나오는 목발이 있는데 그런 건 일반 장애인들은 못 하거든요. 영예군인이나 하지 일반 장애인들은 그런 거 사용 못 하거든요. 저희한테는 차례가 안 오거든요. (참여자 A)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회복치료를 국가가 아닌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의 유형을 떠나 장애 발생 시점부터 국가의 개입보다는 가족에 의한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⁶⁾ 따라서 국가의 보호 수준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북한이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제도를 규정했지만,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행위를 법적으로 선언한 것일 뿐이다.²⁷⁾

²⁶⁾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4호 (2006), 220쪽.

나는 장기 환자인데, 국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었는데 제도의 혜택으로 치료받는 것을 못 했어요. 병원 앞에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도 그 제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죠. 어머니는 항상 아프면 병원에 나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말하고 일을 나가 병원에 주사를 가지고 나가 맞았어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라고, 심장이 많이 커서 심장에 물이 찼다고 하고, 심장에 물이 찬 것은 항생제를 맞아서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항생제를 달고 있으라고 했어요. 일 년 열두 달 항생제를 맞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았는데 항생제는 모두 집에서 시장에서 박스로 사서 자체로 해결했어요. (참여자 E)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과정 자체도 고통스런 일이라고 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치료와 생계를 가족이 모두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모가 생계를 위해 장사나 직장에 출근해야 하므로, 자녀를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어 장애인 자녀 혼자 병원에 다녀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너무 아프니까 한번은 동네 할아버지가 군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나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려 했는데, 그 의사가 세상에 이렇게 심한 환자를 놓고 부모가 함께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만 보냈다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겠는가 자식이 3명이니까 나가 벌어야 하지, 벌어야 죽벌이 밖에 안 되는데 직장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했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병원 가라고 말해요. (참여자 E)

사고를 당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얻은 사람도 많다고 한다. 직업동맹 간부로부터 폭력을 당해 한쪽 눈을 다친 연구참여자 B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항생제도 맞지 못해 결국 시력을 잃고 시

27) 위의 글, 220쪽.

각장애인이 되었다. 기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연구참여자 D도 병원에서 팔과 다리를 자르는 절단수술을 받았지만, 마취제와 수혈도 받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힘든 수술 후 봉합이 터져 재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에 의약품이 없어 가족이 시장에서 구해온 항생제를 겨우 두 번 맞았다고 했다. 퇴원 후에도 일주에 한 번씩 식염수로 닦아주는 정도의 치료밖에 받지 못했다.

이게 봉합수술을 했는데, 이게 뭐랄까 터졌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안 되서 다시 수술했어요. 의약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급된 건 멸균 죽 같은 걸 탄 걸로 기억나고, 의약품이 없으니깐 보름 후에 퇴원하라고 했어요. (중략) 마취 없이 수술하니까 다양한 고통을 다 겪은 거 같아요. (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절단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도 일주에 한 번씩 식염수로 닦아주는 정도의 치료밖에 받지 못했고, 이후 재활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가로부터 회복치료를 위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심각한 시기에 장애인이 된 경우는 국가적 혜택은커녕 그냥 방치된 수준이었다고 한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이었던 무상치료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으며,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적당한 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12세에 심장병에 걸린 연구참여자 E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에 항생제를 가지고 가서 맞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다고 했다. 그는 심장병에 걸린 상태에서 결혼과 임신을 했지만, 어느 병원에서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남한으로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였다.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가 아예 없어요. 병원에서는 선천적인 장기 장애인 치료에 대한 제도는 모르죠. 우리는 북에 있을 때 주사도 다 사서 맞고 아스피린 같은 약도 사 먹었어요. 병원에서 포도당도 없어서 모두 사서 치료했지. (중략) 저는 심장이 안 좋은 데다가 임신했으니까. 심장 내과에 가면 의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니 산부인과에 가라. 산부인과에 가면 시병원에 가라, 시병원에 가면 저 병원에 가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치료를 해주지 않았죠. 남한에 오면 산다고 하니까 탈출해서 남한에 왔어요. (참여자 E)

5) 장애인의 결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는 장애인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와 자녀를 출산할 권리 등이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북한 국가보고서도 장애인 중 기혼자가 75.8%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사회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영예군인과의 결혼은 북한 당국이 특별히 권장하며 여성동맹을 통해 담론화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여성 장애인들은 주로 남성 영예군인이나 장애인 남성과 결혼한다고 한다.

영예군인 아닌 불구자는 시집간다는 게 비슷한 사람한테 가면 조용하지. 다리 못 쓴다는 여자도 영예군인한테 갔는데 그 여자는 그래도 끝내 승낙받아서 결혼했던 말이에요. 어느 부모들이나 내 자식이 성성하면 불구한테 결혼하는 거 누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대상을 만나서 간다는 게 진짜 힘들지요. 의족한 남자한테 성성한 여자 온전한 여자 얻었는데 그 집에서 반대를 세게 했죠. (참여자 D)

장애인에 대한 북한 사회의 편견은 결혼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장애인들을 향한 주위 사람들의 시

선이나 편견, 차별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 장애인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 부족, 장애인에 대한 교육부재라고 인식했다.

야유하듯이, 비난하듯이, 저런 애들도 장가를 간대? 장애인이 결혼하면 자 기들하고 동등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 같 아요. (참여자 A)

6) 장애인의 이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는 ‘거주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차별은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점이다. 평양시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지방이나 다른 도시로 소개(강제이동)시킨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을 지방, 산골,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라 및 수도 평양에 대한 망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D의 오빠도 장애인이라 평양 중심에서 살다가 외곽으로 추방된 경험이 있었다. 장애인이 수도 평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엄연한 이동권 침해이다. 특히 평양에 국제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 외국인에게 장애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장애인 가족을 산골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런데도 추방사업 중에도 장애인 가족이 당 간부이면 평양 외곽지역으로 잠시 이사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국가를 위한 장애인지, 출신성분이 우수한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평양 모란봉구역에 살았어요. 1976년도 아버지가 평양우편국에서 일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을 추방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량랑구역으로 임시 거주지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량랑구역은 당시 평양시에 주요 구역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임시 거주지를 바뀐다면 지방으로 추방되지는 않다고 아버지가 판단했기 때문에(중략) 그러다가 소개시키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모란봉구역으로 돌아왔어요. (참여자 D)

북한에서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들로부터 “먼저 타라”는 배려와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일반 장애인의 지정석이 있지도 않고, 장애인이라고 좌석을 양보해 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이것은 영예군인을 위한 지정석이나 특별침대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영예군인증을 지닌 장애인은 국가에서 마련한 장애인 지정석 등 이동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누린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장애인들은 영예군인증을 제시하지 못해 특별석 침대나 지정석에서 승무원에게 쫓겨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시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영예군인을 제외한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권리는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인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는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도 국가보고서(2018년)에서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북한 사회는 일반 장애인을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같이 어울리기 싫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 장애인과 달리 국가에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영예군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의 도움보다는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대체로 낮은 편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북한에서는 다 살아가는 게 힘들니까 누구를 생각할 형편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옆 사람들이 욕하는지 어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살기 힘들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 안에 있으면 장애 지닌 사람도 가슴이 아픈 건 물론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제일 가슴이 아프죠. 뭐 철없는 애들이 병신이다 하겠지. (참여자 C)

북한에서 불구자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죠. 불구자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불구자이므로 작업에 나오라는 것은 없지만, 불구자여서 아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참여자 E)

북한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북한 주민은 노동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은 노동을 못 하므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못 되니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통제가 심각한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것을 자신보다 약자인 장애인에게 표출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은 먹는 부분에서 받는 거죠. 우리도 먹기 힘들데, 북한말로는 밥술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는데 식량 배급을 안 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장애인에 대한 것도 국가의 경제력에 많이 따라가는 거 같아요. 북한도 과거에는 의족도 해주고 했잖아요. 복지도 돈이 없거나 현실적

인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중략)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랬을까 보면 북한 주민이 사회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풀어야 하는데 국가에게 표출을 못 하고, 그나마 자기가 국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조금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참여자 C)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저런 것들은 죽지 뭐,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나까. (참여자 B)

권력의 지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연구참여자 C는 권력이 높은 집의 자녀들이 장애인을 더 무시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경찰이나 보위부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고 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높을수록 사람들을 더 멸시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나 보위부가 더 차별을 많이 하는 거 같고, 군인들은 좀 반반인 거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남의 일 같지 않네, 이런 식이고. 권력이 높을수록 좀 더 그런 집 자녀들일수록 더욱 장애인들을 더 괴롭히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괴롭힌다거나 그 또래 장애인들을 괴롭힌다거나 해요. (참여자 C)

특히 장애인이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 공권력에 구금된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고문과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그들은 나라를 망신시키고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새끼가 공화국 망신시킨다, 수령의 권위를 장군님 권위를 손상시킨다, 공화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하고, 살아서 중국에 구걸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왜 살아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나라도 아니구나 생각했죠. (참여자 C)

고난의 행군 시절 아버지의 직장에서 배급이 중단되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기차에 올라탔다가 떨어져 장애인이 된 연구참여자 E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 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됐건, 보위부가 됐건, 하여튼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더 괴롭힌다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경찰에 잡혔을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나를 불러서 담배 사 오라고 했어요.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성한 사람도 한 달 별어서 담배값이 안 나오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담배 안 사 오면 두들겨 패고. (참여자 C)

2) 언어로 표출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언어로 표출되고 있으며, 북한 장애인들은 언어적 편견과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북한 주민은 장애인에 대해 ‘불구자’와 ‘병신’이라는 호칭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병신’이라는 호칭은 나쁜 의도인 욕으로 사용하며, 적은 수이긴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호칭도 사용한다. 실제 북한 사회에서는 불구자, 장애자로 부르기도 하는 비속어로 호칭하고 있다.

병신은 타고나서부터 이렇게 된 사람을 병신이라 하지. 나는 태어난 병신이 아니고 불구자지, 불구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참여자 B)

그저 불구자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세계 장애인의 날이 나오면서 노동신문이랑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르신들 이랑 모든 사람들이 불구자라고 말 많이 해왔으니 거의 불구자라고 말하거든요. 평양에 장애인센터라고 있다는 데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불구자라고 하죠. (참여자 A)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장애인에 대해 북한 사회가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불구자, 사회보상자 및 공상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공상한 자’라는 호칭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었다. ‘사회보상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료적 판단이나 사회적 기준을 근거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불구자’라는 호칭과 달리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국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을 호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시기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전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대체로 불구자와 병신이라는 호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후부터는 북한 사회가 장애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상한 자라고 그런 거 같아요. 공장일 하다가 상했다는 의미인지 공상자, 그러더라고요. 공상자 그래도 장애인이라고도 해요. (참여자 C)

하지만 모든 장애인을 장애자로 호칭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국가에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구자나 병신은 선천적 장애인이나 국가 일과 상관없이 다친 후천적 장애인을 일컫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병신’은 선천적 장애인을, ‘불구자’는 후천적 장애인을, ‘장애자’는 영예군인처럼 국가에 공훈을 세우다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차별해서 부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구라고 안 그래요 장애인이라 해요. 북한도 장애인이라 하죠.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자기 기케 된 거하고 장애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느 다친 사람을 장애인이라 한 건 난 못 듣고 그저 국가 일하다가 다친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는 줄 알았어요. (참여자 D)

철없는 아이들은 지나가는 장애인을 보고 놀렸지만, 성인들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욕하는 언어적 차별을 일반적으로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싸우거나 할 때는 장애인에 대해 ‘병신, 병신새끼’라는 욕설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장애인 가족들은 ‘병신네 집’이라는 언어적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 특히 장애인 자녀들은 학교 생활에서 장애인을 부모로 두었다는 이유로 위축당하는 경험을 하거나, 자식들도 장애인 부모가 학교에 왔을 때 부모를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상태로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딱 듣기에 머저리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보면서 수근덕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며 모욕을 주었어요. (참여자 E)

내가 팔이 불구니까 우리 딸들이 나가서 다른 동무들처럼 혹시 소외되지 않겠나 이걸 계속 생각하죠. 나도 아무래도 약간 위축이 돼요. 다른 부모들은 뭐 학교 가서 도와준다, 색칠해 준다, 학교에 이리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른 장애인 부모들은 아이들도 주눅 드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학부형이랑 가게 되면 그저 자식들 자체가 좀 부끄러워하고 우리 엄마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창피해하고 그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참여자 D)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심각한 언어적 차별을 겪고 있다. 병신이라는 말과 함께 장애 정도나 장애 부위에 따라 ‘짚룩이, 꼽새, 귀떡재’라고 부른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눈떡재,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귀떡재,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넛병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49호 환자 등의 비속어 호칭이 많다고 한다.

저는 정면에서는 못 들었는데 뒤에서는 나를 보고 나를 찾는 것 자체도

짤룩이라고 찾고요. 우리집 찾을 때도 짤룩이네 집이라고 하고, 등이 나온 사람한테는 저 꼬새네 집 가봐라 거기 장애인 차별이 있죠. 짤룩이네 집 꼬새네 집. 귀 못 듣는 사람 네 집은 귀먹재네 집. 근데 본인들 앞에선 말 안하
고요. (참여자 D)

시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지나가는 장애인에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장애 정도를 가지고 ‘병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제침체로 비장애인들도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해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판단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동정하는 사람, 그냥 인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봤을 땐 25% 되지 않을까 싶고, 25퍼센트는 인정하던지, 나머지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가난할수록 내 먹을 n분의 1을 저놈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 것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 너희들이 국가 혜택을 받으면 우리가 먹고사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참여자 C)

3) 교육·언론에 나타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의 학교나 강연회 등의 정치사상교육 등에서 장애인 관련 이야기,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일반 장애인이 아닌 ‘영예군인’에게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하는데 여느 불구자는 조금 안중에 없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처녀 아이가 일하다가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 처녀가 다리가 없으니까 손 짚고 이렇게 사무소 왔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정이 덜하단 말이에요. 도와주려는 게 조금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예군인들한테는 위에서부터 도와줘야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가죠. 그 처녀도 일하다가 다쳤는데 직장에서도 이제는 일을 못하게 됐으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끝내 그 집은 다 굶어 죽었어요. (참여자 B)

기차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도와주고 배려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없어요. 당의 학습과 강연회에서 불구자들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못 들었어요. (참여자 E)

북한은 최근에 장애인 체육대회 및 공연 소식이나 평양에 세워진 장애인센터를 소개하면서, 장애인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 지원정책 및 실행사례를 알리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수 장애인을 내세워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예군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사회적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국가가 하는 모든 학습이나 강연회, 신문·방송에서 불구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걸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2016년도인가 TV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장애인이 어느 나라에 가서 공연한 게 나오더라구요. 근데 장애인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이렇게 잘 도와줘서 장애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산다, 이런 게 TV로 나왔을 뿐이지 도와줬다 하는 건 없어요. 평양에 장애인센터가 나왔더라구요. 장애인센터가 평양에 나왔는데 각 지방마다 장애인센

터를 개설하라고 과업은 떨어졌는데 아직 지방에 개설된 건 없다고 들었어요. 저 넘어오기 전에 작년 2018년에. (참여자 A)

이처럼 북한 당국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전체 주민의 배려와 관심을 전달하고 있다. 국위를 선양하는 장애인의 긍정적 활동도 소개하고 있으며, 평양 장애인센터 등의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애인 지원정책이나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에 대한 관심 보다는 ‘영예군인’처럼 국가를 위해 앞장서 헌신한 장애인 집단이나,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대상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 연구참여자 C는 지금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식의 변화에 대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생계수단이 있는 장애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계수단이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뀌진 않았을 거 같구요. 북한이 지금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보니까 생계를 하는 장애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돈벌이 수단이 있다거나 하나만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하진 않겠죠. 그렇다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거나 그런 게 바뀌진 않을 거 같아요. 그건 구조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국가적인 노력이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언론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C)

연구참여자들을 모두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이 좋아서 장애인이 지나갈 때도 무관심하게 보편적으로 바라보지만,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어,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했다.

남한은 장애인이 많고 그만큼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인 배려가 좋아요. 북한은 진짜 이상하게 불구하고면 솔직히 말해서 그저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다 돌아본단 말이에요. 나도 지나갈 때면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깐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봤어요. 북한은 불구하고 지나가면 계속 보고 아이들도 그저 안 지나가고 다 그저 이상스럽다고 보고야 지나가지요. 남한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무관심해서 보편적 현상으로 보잖아요. (참여자 D)

남한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사회적으로 높으니까 사람들 자체도 장애인들에 대한 눈길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국가적으로 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보는 것만큼 장애인들도 아무데 가서나 소외된 경우가 많지요. (참여자 C)

4) 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보장제도와 관련해 공장에서 노동하다 다치면 보상이 제공된다는 것과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노동공장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증 장애인에게는 4시간 노동 등급제가 있어 일을 할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자 일이 없어 노동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부담은 장애인 가족들의 사회동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작업장에서는 시간제인 4시간 8시간 등급제가 있어요. 사회보장자면 4시간 하고 집에서 노는 4시간짜리가 있는데, 일할 게 없으니까 놀지. 대신 가족이 일 나가야 되니까 그 가족의 사회동원은 내가 부담 받지. (참여자 B)

작업장 등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장애비라는 현금 급여를 지급받

고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학생으로 배급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라 일을 하지 못해 배급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증장애인을 위한 경노동공장이나 편의시설에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나, 영예군인 위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이 일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비라고 있죠 뭐.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전까지는 돈 700원을 받았어요. 배급은 일할 나이 될 때까지는 중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일해야 주잖아요. 북한은 아버지 직장에서 무조건 일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직장에서 아무거나 험한 일 해야지 국가적으로 노임 쌀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하나 하니까 아버지 직장에서 받게끔 해야 되는데요. 군 노동과에서 아무 일이나 시키라 하는데 편의 부문 같은 데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편의 부문에서는 우리를 못 받는다고, 일을 못하니까 쌀도 못 받게 됐지요. 아무 것도 못 받는 거지요. (참여자 B)

북한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조선노동당의 정책 기획 → 내각중앙성 → 도 → 시·군 → 읍·리 등 공적 공급체계로 단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급체계는 사적 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²⁸⁾ 하지만 실제 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A와 C는 장애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가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 혜택은 노동할 수 있는 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처럼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 알고 있으니깐 가본 적은 없어요. 같은 값

²⁸⁾ 장용철,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1호 (2015), 84쪽.

이런 그런 혜택이 있다 해도 노동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그나마 먹을 것이 됐건, 국제사회의 지원이 됐건, 하는 거지 저에게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참여자 C)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공장, 기업소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우대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여객열차, 버스, 영화관, 도서관, 여관, 목욕탕, 오락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도나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와 기차, 식당 등에 영예군인을 위한 좌석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한 장애인 제도는 주로 일반 장애인이 아닌 영예군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에 대해 알지도 못할뿐더러,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국가적 혜택은 전달되지 않는다.

3. 북한 장애인의 유형별 · 집단별 차별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취업 및 직장배치, 대학 입학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했다. 특히 출생 당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사회는 장애 유형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후천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과 선천적인 장애인에 따라 차별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며, 정신적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서 놀리고 막 이려는 건 봤어요. 내가 뭐 여기 오기 전에 함경북도 인민반에 있었던 말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이 지적장애였던 말이에요. 그러니 남의 것을 배고프니까 못 사니까 도둑질했는데 그 주인집에서 아예 죽도록 때렸어요. 이딴 새끼 죽여야 된다면서(증략)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이 세계 매 맞고 이런 애들 봤어요. (참여자 A)

나는 육체적인 불구지 정신적인 불구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장자의 경우, 일하다 불구자가 된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선천적인 장애인의 경우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선천적 장애자나 후천적 장애자나에 따라 차별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D)

북한 사회는 일반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장애인과 달리 국가에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영예군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인 집단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었고, 다음으로 후천적 장애인 집단이 차별을 경험하며, 영예군인 집단은 차별보다는 영웅이나 애국자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는 장애 집단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장애자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세워 노력하고 있지만, 그 정책의 혜택이 전체 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전달되기보다는 국가에 공훈을 세운 후천적 장애인에게 편중되어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 전체에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개념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대우라는 게 없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구라 하게 되면 정상 사람들에서 소외된 거죠. 나는 직장에서 다쳤으니까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다친 선천적

인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잘 안 받아준단 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이 국가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일 시키는거지, 태어나서부터 불구라면 받지를 앓는단 말예요. (참여자 E)

북한 당국은 「사회보장법」에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 제40조에는 노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현금급여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에게 복지급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주의보다 영예군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을 통해 장애인이 된 사람을 지원하는 ‘영예군인’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영예군인 제도는 북한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생긴 일반 장애와 달리 영예군인은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반 장애인에게는 어떤 국가적 지원정책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으며, 장애인 자신도 국가가 아닌 가족들이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

식량이라도 배급을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환경에서 건강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은 가족의 보호가 없다면 죽을 환경에 있죠. (참여자 B)

2000년 이후에 북한 경제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국가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지금도 없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혜택이 없다. 아팠는데 치료라는 것은 없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이불 펴놓고 누워만 있었다. (참여자 E)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에서 질병 후유증이나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지닌 북한 이탈주민 5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의 삶과 그 속에서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장애인은 교육과 조직생활, 생계유지와 회복치료, 결혼과 이동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 북한 사회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며, 장애인들은 언어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 북한 당국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했다. 셋째, 그 과정에서 북한 장애인들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으며 장애 유형별, 집단별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 장애인의 삶과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UN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진일보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장애인들은 장애 유형 및 집단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장애인은 장애 여부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을 대체로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경노동 시설에 보내지만, 장애의 원인에 따라 지원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가를 위한 전투나 군복무 중 장애를 입은 '영예군인'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선천적 장애인이나 개인적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후천적 장애인에게는 그 적용이 미

비하다. 국가를 위한 장애인만 영웅 취급하며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 유형 및 집단별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북한 장애인들은 교육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며 교육권의 침해를 받고 있었다. 장애인이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장애인은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교사의 적극성이나 부모의 열성이 있는 경우에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사업도 제도는 있지만, 실행력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국가에 필요한 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 공간에서의 차별이 계속되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3년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전까지 북한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노동능력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노동능력을 상실한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후천적 장애인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노동능력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노동능력 상실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는가'로 변화했다. 법 제정으로 북한에서도 선천적 장애인을 장애자 범주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

면 실제에서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는 장애의 원인과 노동능력 정도에 따라 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낙오자로, 북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북한 사회에서 인권보호의 대상이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지상주의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장애인들은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빠른 회복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장애가 고착화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03년 「장애자보호법」에 ‘장애자의 회복치료’ 조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의료 지원정책을 확대하였다.²⁹⁾ 연구참여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경험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은 북한 당국의 의료 지원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예군인만 대우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침체와 열악한 의료사정으로 인해 사고와 질병을 적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더 많은 장애인을 양성하고 있었다. 장애인 재활치료도 가능하지 않아 더 심각한 장애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도 몇 달 이상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가서 기다려야 하므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장애인은 보조기구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 결국 북한

29)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회복치료가 장애인의 기능장애를 없애려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제10조에는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11조에는 장애자치료회복기관을 조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의료일군과 기관, 기업소, 단체, 가정에서 장애인의 치료회복을 시행할 것을, 제13조에는 장애인의 치료방법을 연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제14조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 보장하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의료적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의 열악한 의료현실은 장애인의 회복치료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더 많은 장애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 후 자신들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드러난 장애인 권리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실천을 시작한 것처럼, 현실적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북한 사회의 장애인 인권의식을 개선하려면 북한 대중매체를 통한 장애인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절실하다.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장애인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들을 사회 전체가 배려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교육이 시급하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할 것이며,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 제도적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 기술과 노하우, 인력과 관련 인프라 보유,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단기간 내에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한과 북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문제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과 북 모두에서 장애인은 주류 사회로부터 소수자로 소외되어 있다. 앞으로 남한 장애인뿐 아니라 북한 장애인에 대한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남북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 장애인의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

한 장애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함께 북한 당국의 장애인 권리 실현에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장애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직접 경험한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그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차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북한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유추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의 전체 장애인이 아닌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살다 탈북한 장애인 5명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져 북한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한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 접수: 2021년 10월 31일 / 심사: 2021년 12월 4일 / 게재확장: 2021년 12월 5일

【참고문헌】

- 도경옥 · 김수암 · 이규창 · 한동호 · 홍민 · 임예준,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오경섭 · 홍석훈 · 홍제환 · 정은미 · 이지순,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김성희 · 이연희 · 오옥찬 · 황주희 · 오미애 · 이민경 · 이선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김석향,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85~110쪽.
- 김석향 · 김미주,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32권 2호, 2020, 1~27쪽.
-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 · 제도 · 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노총』 제11권 4호, 2006, 215~234쪽.
- 송인호, 「북한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9권 1호, 2019, 123~152쪽.
- 안상권 · 홍정숙,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3호, 2016, 237~261쪽.
- 윤세라 · 허준기,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정체성 연구: 중도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2018년 11호, 2018, 252~307쪽.
-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2013, 1~28쪽.
- _____,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인권과 정의』 통권 465호, 2017, 109~128쪽.
- 이미선 · 이경숙, 「북한 아동기 발달장애 진단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통권 52호, 2021, 33~54쪽.
- 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동북아연구』 제34권 1호, 2019, 215~243쪽.
- 이철수 · 김효주,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협약원칙의 쟁점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1호, 2019, 105~156쪽.

- 장용철,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1호, 2015, 71~102쪽.
- 정유석·이철수,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 2016, 7~36쪽.
- 정지웅,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한국장애인복지학』 통권 33호, 2016, 237~260쪽.
- _____,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3호, 2020, 627~634쪽.
- 정지웅·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4권, 2016, 155~180쪽.
- 조가람·이용호, 「북한의 장애인체육 현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1호, 2018, 54~94쪽.

『로동신문』 2012년 9월 30일.

『로동신문』 2018년 7월 29일.

『로동신문』 2018년 12월 3일.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로동신문』 2019년 12월 4일.

『로동신문』 2021년 8월 12일.

『로동신문』 2021년 1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3835호 2003년 6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3447호 2013년 1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2013.

Social Awareness and Discrimination Revealed in the Lives of the Disabled in North Korea

Song, Hyeon-Ji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in North Korea, and the social perception and status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m.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physic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illness or accident in North Korea. First, in North Korea, the disabled live dependent on their families without any support or benefits from the state education, community life, livelihood, recovery treatment, marriage, or movement. Second, North Korean society perceives disabled people as beings not equal to non-disabled people, and the disabled experience linguistic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o not actively inform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through education or the media, meaning that the disabled do not receive adequate benefits. Third, North Korean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severe discrimination by disability type and group.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with disabilities, as experienced by them, in their own vivid voices. Above all, the study was conducted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ere attempting to change the system for the disabled, making

it meaningful in that it can infer a gap between the system and reality.

Keywords: North Korea, disabled persons, social awareness, discrimination, disabled persons protection act

송현진(Song, Hyeon-Jin)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의 영웅 정치, 북한 사회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및 사회통합, 국내외 대북지원 현황 등이다. 대표 논저로는 『북한여성, 변화를 이끌다』, 『남과 북, 평화와 공존』,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김정은 체제 '여성영웅' 정치의 유형과 특징」 등이 있다.